

## 유초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외국인 고객님께

■ 계좌 개설 시, 주소·이름 변경, 인감 변경 시에는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체류 자격·체류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으실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외교관 등 가운데 재류카드를 받지 않으신 분은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체류 기간 만료일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체류 기간 갱신 절차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계좌 개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체류하실 예정인 고객님께서 체류 기간 연장 수속 후에 체류 기간이 갱신된 새로운 재류카드를 지참하시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국 시 결정된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재류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은 유초은행·우체국에서는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 ※ 체류 자격·체류 기간 갱신 수속 중이신 분은 갱신 후 새로운 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사원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 자격이 '유학'·'기능 실습'인 분은 계좌 개설 시에 재적 사실 및 근무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카드와 함께 학생증 및 사원증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나 근무처에 재적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좌 개설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님께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실 시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한 각종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당일에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어 추후에 통장을 고객님 자택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주의 사항

- 재류카드를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 후의 카드를 지참하시고 신속하게 창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시해주신 증명서류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 비거주자로 신고하신 분 가운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신 경우에는 신속하게 창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 등 일본 국외로 진출하실 때에는 계좌 해약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제 3 자에게 이용하게끔 할 것을 목적으로 한 계좌(통장·현금카드) 양도 및 매매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